

표준어 규정 고시 이후의 몇 문제

김 희 진

(국어연구소 연구원 · 국어학)

□ 머리 말

'88년 1월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후 국어연구소에서는 '표준어 모음' 발간을 위한 표준어 심의를 계속해 왔다. '89년도에는 우선 사전간에 상충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심의하였는데 심의 기준의 대원칙은 '표준어 규정'에 따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 규정 중에서는 경우에 따라 규정의 취지를 두고 견해차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ㅣ'역행동화, '-장이'와 '-쟁이', '수'와 '숫-', 모음조화 등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참고 자료에서의 처리 내용 및 고시 과정을 간략히 더듬어 보고, 이 규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견해 차이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쓰인 자료들의 약칭(略稱) 및 자료에서 쓰인 약호(略號)는 다음과 같다.')

<약칭>

(모) :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년, 조선어학회)

1) 여기에서의 사전과 안(案), 그리고 교과서는 다음에 국한한다.

사전 : 큰 사전, 중사전, 새한글사전, 국어대사전, 새 우리말 큰사전

안(案) : 국어심의회안, 학술원안, 국어연구소안

교과서 : 국민학교 교과서(전과목, 전학년), 중학교 국어 교과서(전학년), 중학교 국사 교과서(전학년)

교과서 관계는 다음 자료의 도움을 받았다.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국어연구소, 1986·1987년), 국민학교 교과서 어휘 연구(정우상, 1987년), 중학교 교과서 어휘(국어, 국사)(국어연구소, 1988년)

- (큰) : 큰 사전(1947~1957년, 조선어학회·한글학회)
 (중) : 중사전(1958년, 한글학회)
 (새) : 새한글사전(1986년, 고친판, 한글학회)
 (대) : 국어대사전(1982년, 수정 증보판, 제1쇄, 민중서림)
 (우) : 새 우리말 큰사전(1986년, 제7차 수정 증보 제1판, 삼성출판사)
 (심) : 표준말안(1979년, 문교부 국어심의회)
 (학) : 표준어 개정안(1984년, 학술원)
 (연) : 표준어 규정안(1987년 9월, 국어연구소, 문교부 보고용)
 (고시) : 표준어 규정(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국교) : 국민학교 교과서(1984년판, 13과목 70권)
 (중교) : 중학교 국어 교과서(1984년판)
 (중사) : 중학교 국사 교과서(1984년판)

<약호>

- : 예시어의 모습대로 등재, 표준어로 인정된 것
 × : 비표준어로 다루어진 것 (빈칸으로 둔 것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임)
 ×○ : 예시어의 모습대로 등재되었으나 비표준어로 다루어진 것

1. ‘ㅣ’모음 역행동화

‘ㅣ’역행동화의 처리 문제는 오랫동안 이의 동화형의 처리 여부나 적용 범위를 두고 논란을 거듭해 온 것 중의 하나다.

‘표준어 규정’ 제9항에서 “‘ㅣ’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내기’, ‘냄비’, ‘동맹이치다’는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 규정은 (심)(학)(연)에 이어 온 것으로 <표 1>과 같이 중전의 사전과는 달라졌거나

<표 1>

예시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국교)	(중교)	(비교)
내기	나	나	나	나	나	나	○	○	○			
냄비		남	남	남	남	남	○	○	○			
동맹이치다		-당	-당	○	○	-당	○	○	○			
아지랑이	○	-랭	-랭	-랭	-랭	-랭	○	○	○	-랭-	-랭-	

일치되지 않은 처리를 정리한 것이다.

1) -내기 : '근본, 또는 처음 나온 사람의 뜻'으로 (모)나 사전에서는 '-나기'²)를 인정하면서도 '신출내기'에 대해서는 (큰)(중)(우)가 선택하는 모순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현실 발음을 존중하여 (심)에서부터 '-내기'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2) 냄비 : 사전은 '남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 언어에서는 '냄비국수' '냄비우동' 등으로 '냄비'가 상당한 세력으로 쓰이어 (심)에서부터 줄곧 '냄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3) 동맹이치다 : '동맹이치다'와 '동당이치다'는 사전간에 불일치를 보이며 (새)(대)는 '동맹이치다'를, (큰)(중)(우)는 '동당이치다'를 인정하고 있는데, 현실은 '동맹이치다'가 우세하므로 (심)에서부터 '동맹이치다'를 택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교)에도 '내동맹이쳐지다', '내동맹이치다'가 각각 나타나 '동맹이-'쪽을 무시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4) 아지랑이 : (모)에서 '아즈랑이'가 아닌 '아지랑이' [嵐氣]를 인정한 데 대하여 사전이나 (국교) 및 (중교)에서도 '아지랭이'를 보여 그 동안 혼란을 보였던 것인바, (심)(학)(연)에서 다시 '아지랑이'를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³)

(모)는 'ㅣ'모음 역행동화에 대하여 다음의 예를 들었다.

• 'ㅏ'와 'ㅑ'의 통용 중 'ㅏ'를 취하는 것

가랑이[股肢](×가랭이)	가자미[鰈](×가재미, 가제미)
곰팡이[黴](×곰팽이)	고장이[女褲衣](×고쟁이)
나바기[年多者](×나배기)	다리[脚·橋](×대리)

2) (모)는 '-나기' 단독으로는 보이지 않고 서울나기[京出生人], 시골나기[鄉出生人], 촌나기[村出生人], 낫나기[新出者]를 예시하여 인정하였다.

3) '아지랑이-아지랭이'에서는 이견에는 '아지랑이'였던 것을 1958년에 한글학회에서 낸 '중사전'에서 '아지랭이'로 바꾼바, 문교부가 이 '중사전' 표기를 교과서 표기의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교과서에 '아지랭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지랑이'는 유어(類語)나 어원(語源)에 관련이 없는 말이므로 '아지랭이'로 'ㅣ'의 역행동화를 받아들일 만도 하건만 어감상 '아지랑이'쪽이 더 품위 있는 것같이 느껴져 이번 표준어 개정 심의에서는 '아지랑이'로 환원시키기로 했다(이웅백; 1988: 143).

이렇게 '환원'하는 데 대해 김택춘(1988. 2. 5. 출판저널)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달이다[煎](×대리다)	다리다[熨](×대리다)
다리미[熨斗](×대리미)	당기다[引](×당기다)
모가비[人夫頭目](×모개비)	쓰르라미[寒蟬](×쓰르래미)
삭히다[醞釀](×색히다)	삭이다[消化](×색이다)
잠방이[擻鼻禪](×잠뱅이)	지팡이[杖](×지팽이)
지푸라기[草芥](×지푸래기)	차리다[準備](×채리다)
흠타기[隙間](×흠태기)	아끼다[惜](×애끼다)
아기[小孩](×애기)	아비[父](×애비)

• ‘내’를 취하는 것

깍대기[殼皮](×깍다기)	꼭대기[頂上](×꼭다기)
가난뱅이[貧者](×가난방이)	갈매기[鷗](×갈마기)
내리다[降下](×나리다)	노래기[香娘각씨](×노라기)
매꼽재기[垢滓](×매꼽자기)	때리다[打](×따리다)
달팽이[蝸牛](×달팡이)	다래끼[小提籠](×다라끼)
댕기[辮髮紐](×당기)	댕기다[引火](×당기다)
도깨비[鬼魅](×도까비)	새끼[雛](×사끼)
새끼[藥繩](×사끼)	새기다[刻·訓讀](×사기다)
재미[趣味](×자미)	채비[差備](×차비)
포대기[襁褓](×포다기)	올빼미[梟](×올빠미)
올챙이[蝌蚪](×올창이)	옹배기[小盆](×옹바기)

• ‘나’와 ‘내’의 통용 중 ‘나’를 취하는 것

구덩이[窟](×구뎡이)	누더기[襤褸](×누뎡기)
덩이[塊](×뎡이)	무더기[堆積](×무뎡기)
헛김나다[氣泄出](×헛김나다)	어미[母](×에미)

(심)은 ‘ㄱ’역행동화가 적용된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조개비,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 풋내기, 냄비, 복냄비, 깍대기, 동덩이치다, 나부래기, 맨드래미, 바래기, 오래기, 노오래기, 지푸래기, 매생이, 가재미, -쟁이(가살-, 가짓말-, 간살-, 갓-), 가쟁이, 난쟁이, 만쟁이, 담태기(-쓰다, -썩우다), 흠태기. (이상 24개, ‘-쟁이’ 제외)

게뚜테기, 꺾테기, 친테기, 칩테기, 덤테기. (이상 5개)

그리고는 'ㄷ'역행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예로 '꼬창이(물-), 가스랑이, 아지랑이'를 비롯하여 193개 단어를 들었는데 예시가 생략된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ㄷ'역행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취하고자 한 것은 '개신형(改新形)이 품위가 덜하고 경박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어, 이런 변화는 신중을 기해 받아들여야겠다는 태도를 아울러 가지고 심의에 임했으며, 30여 년의 국어 교육이 있었고 교육의 효과 또한 컸음을 감안할 때, 새 표준어를 전국적으로 시행함에 즈음하여 일어날 혼란이나 마찰을 극소화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과 (연)은 (심)에서 다른 것 중 '냄비', '복냄비', '동댕이치다', '서울내기', '시골내기', '신출내기'만을 적용하였는데⁴⁾ 이는 '현실음을 지나치게 반영한 나머지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우리 언어 생활, 특히 문자 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만큼 크게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결과'⁵⁾로 보인다. 따라서 (학)이나 (연)은 (심)에 비하여 표준어를 개정하는 폭을 좁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놓고 'ㄷ'역행동화는 위의 세 단어에만 적용하느냐, 아니면 좀더 개방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두 가지 해석이 생기게 되었다. 즉 전자의 해석에 따르면 '-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이외의 것은 일체 'ㄷ'역행동화형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규정상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어 규정'에서 다루어진 관계 단어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참고로 '한글 맞춤법'에서 나타난 예시어들도 함께 들기로 한다.⁶⁾ ('어'는 '표준어 규정'을, '맞'은 '한글 맞춤법'을 이른다.)

<표 2>에 의하면 '표준어 규정'에서의 예시어는 다음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ㄷ'역행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어형을 지킨 것: 너부렁이, 비켜덩이, 외눈박이, 심술꾸러기, 욕심꾸러기.

4) (심) : p. 54 참조.

5) (연)은 '복냄비' 대신 '푹내기'를 비고란에서 제시하였다.

6) (학) : p. 59, 62.

7) (새)는 '짚북더기'를 '짚북세기'에 대해, (심)은 '너부렁이'를 '나부랑이'에 대해, (큰)과 (대), (우)는 '외눈박이'를 '애꾸눈이'에 대해 각각 비표준어로 보았다.

〈표 2〉

	예 시 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어11항	깡쟁이	-정-	-정-	-정-	-정-	-정-	-정-	○	○	○
어17항	짚북데기				×-더-	-더-	-더-	-더-	-더-	○
어19항	나부랭이	-랑-	-랑-	-랑-	-랑-	-랑-	-랑-	-랑-	-랑-	○
	너부렁이		○	○	○	○	○	×○	○	○
어21항	죽데기		-더끼	-더끼	-더-	-더끼	-더끼	-대-	-더-	○
어25항	부지깡이	○	○	○	○	○	○	○	○	○
	비켜덩이	○	○	○	○	○	○	○	○	○
	자배기	○	○	○	○	○	○	○	○	○
어26항	의논박이		×○			×-배기		○	○	○
	심술꾸러기 ⁸⁾	○	○	○	○	○	○	○	○	○
	육십꾸러기		○	○	○	○	○	○	○	○
맞19항	올가미	○	○	○	○	○	○	○	○	○
맞24항	누더기	○	○	○	○	○	○	○	○	○
맞27항	오라비		○	○	○	○	○	○	○	○

- 2) ‘ㅣ’역행동화 어형을 취한 사전에 따른 것 : 부지깡이, 자배기.
- 3) ‘ㅣ’역행동화를 적용한 개정안에 따라 종래 사전과 달리 된 것 : 깡쟁이.
- 4) 사전이나 일부 개정안과 달리 ‘ㅣ’역행동화가 적용된 어형을 취한 것 : 짚북데기, 나부랭이, 죽데기.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나부랭이’와 ‘너부렁이’다. 이들은 한 쌍을 이루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면서 어느 한 쪽은 ‘ㅣ’역행동화가 적용되고, 또 어느 한 쪽은 이 동화가 적용되지 않은 불균형을 보이기도 한다.⁹⁾

위의 예시어들을 통하여 볼 때 제9항의 규정은 ‘-내기’, ‘냄비’, ‘동덩이치다’의 세 단어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고 하여 이 적용 범위를 무한대로 개방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는 ‘가자미’나 ‘가재미냐’, 또는 ‘가장이’나 ‘가쟁이’나 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논란을 거

8) (모)와 (큰)의 경우 ‘심술꾸러기’는 ‘심술구러기’로 나타난다.

9) 물론 이러한 동화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듬해 왔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그 동안 제출된 안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제 1 안 : 지팡-막대 ; 지팡이(발음이나 표기를 '지팡이'로 한다.)

제 2 안 : 지팡-막대 ; 지팡이(발음과 표기를 '지팡이'로 한다.)

제 3 안 : 지팡-막대 ; 지팡이(표기는 '지팡이'로 한다.)

지팡이/지팡이(발음은 '지팡이' 또는 '지팡이'로 한다. 이 발음은 '지팡이'를 원칙으로 하되 '지팡이'도 허용하는 조건임.)

그러나 각안(各案)들이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 세 안 중 어느 한 안에 선뜻 쫓을 만큼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현실 발음이 아무리 'ㅈ'가 아닌 'ㅊ'로 난다 하더라도 'ㅈ'로 적고 'ㅊ'로 읽는 법은 '표준 발음법'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었다. 실상 "현실 발음이 'ㅊ'라 하더라도 표기만은 'ㅈ'로 하자"는 안은, 발음은 설사 'ㅊ'를 쫓을지 언정 표기까지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기에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표기법의 보수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심의회에서 'ㅣ'역행동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변개(變改)를 꺼리는 보수적인 위원과, 언제까지나 현실 언어 따로, 표준어 따로 각각 두고 접착 커 가는 간극을 지켜보기만 하겠느냐는 위원들과의 팽팽한 맞물림 속에서 수차례 걸친 논의에도 합의점을 얻지 못한 채 추후 재론을 거듭하곤 하였다.

'ㅣ'역행동화 문제 해결에서 존중된 것은 다음과 같은 '유어 관련(類語關聯)이나 어원 관련(語源關聯)'이었다.

올챙이 : ~고랑이(고랭이), ~꿀, ~배, ~술, ~자리, ~하늘지기

꼬챙이(꼬창이) : ~질

꼬창 : ~모

꼬맹이 :

꼬마 : ~둥이, ~잎, ~자동차, ~잠자리

가시랭이 : (초목의 '가시'의 부스러기)

냉이 : ~벌레, ~씩, ~스국

지팡이 :

지팡 : ~막대

나방이 :

나방 : ~뽕똥, ~내기, ~살이맵시벌, ~아목, ~파리

모지랑이 :

모지랑 : ~붓, ~비

오그랑이 :

오그라(랑) : ~들다, ~뜨리다, ~망태, ~오그랑

사그랑이 :

사그라(랑) : ~지다, ~뜨리다, ~주머니

꼬부랑이 :

꼬부라(랑) : ~지다, ~뜨리다, ~글자, ~길, ~할미, ~할아범, ~
늪은이, ~다리지네, ~말

호랑이 :

호랑 : ~가시나무, ~거미, ~꼬리여우원숭이, ~나비, ~버들, ~연,
~요, ~지빠귀, ~하늘소

노랑이 :

노랑 : ~가슴담비, ~가슴먼지벌레, ~가오리, ~가자미, ~각시

빨강이 :

빨강 : ~고동색, ~무지기, ~부처, ~불가사리

위의 말에 대한 자료들의 처리는 <표 3>과 같다.

각 사전들이 ‘울챙이’, ‘냉이’, ‘지팡이’, ‘나방이’, ‘모지랑이’, ‘오그랑이’, ‘사그랑이’, ‘꼬부랑이’, ‘호랑이’, ‘노랑이’, ‘빨강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어와의 관련에서 볼 때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꼬맹이’나 ‘가시랑이’는 유어와의 관련에서 ‘꼬망이’나 ‘가시랑이’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언중들이 이들을 굳어진 것으로 보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음에 언급할 것은 ‘꼬창이’, ‘꼬챙이’인데 (새)를 제외한 각종 사전(국어 사전뿐만 아니라 외국어 대역 사전에도) ‘꼬챙이’로 되어 있고(국교)와(중교)에도 ‘꼬챙이’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꼬챙이’로 할 수도 있겠으나 ‘1’역행동화 적용 여부에 하나의 기준으로 참고할 유어 관련을 고려하여 ‘꼬창이’를 취함도 어려운 일은 아닐 성싶다.¹⁰⁾ 이에 준하여 ‘두

10) 그러나 일반적으로, 합성어·파생어에의 적용 여부는 그리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용백(1988:141~143)은 조선어학회의 ‘표준말 모음’이 세운 처리 기준(‘1’의 역행동화로 ‘ㄱ ㄱ ㅏ ㅏ’가 ‘ㄱ ㅈ ㅈ ㅈ’로 발음되는 습관이 있을지라도, 유어 관련이나 어원 관련(語源關聯)이 있는 말들은 본음(本音)의 말을 취함.)에 의하여 다음 몇 단어를 처리하였다.

<표 3>

단 어	(모)	(큰)	(중)	(새)	(대)	(우)	비 고
올챙이	○	○	○	○	○	○	(국교) 13회
꼬챙이	○	○	○	-창-	○	○	(국교) 14회 (중교) 6회
꼬맹이		○	○	○	○	○	
가시랭이	가스랑이	○	○	○	○	○	
냉이	○	○	○	○	○	○	(국교) 1회
지팡이	○	○	○	○	○	○	(국교) 14회 (중교) 7회
나방이				○	×○	×○	(대·우) '나방'과 '나비'의 비표준어임.
모지랑이		○	○	○	○	○	끝이 닳아 떨어진 물건.
오그랑이		○	○	○	○	○	1. 안으로 조금 오그러져서 있는 물건. 2. 마음씨가 꼬부라진 사람.
사그랑이		○	○	○	○	○	다 삭은 물건.
꼬부랑이		○	○	○	○	○	
호랑이	×○	○	○	○	○	○	(국교) 48회 (중교) 27회 (모) '범'의 비표준어임.
노랑이		○	○	○	○	○	
빨갱이		○	○	○	○	○	(대·우·중교) '공산주의자'라는 의미로 '빨갱이'가 있음.

손으로 사용하는 큰 방망이'도 '쌍망이'가 좋겠고, 또 큰 세력으로 쓰이고 있는 '애기', '애비'도 '아기', '아비'가 점잖게 들릴 것이다. 한편 '아무 기능이나 기구가 없이 매나니로 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뜻으로는 '진깡깡이'가, 악기 이름으로는 '깡깡이'가, '많은 물건이 차곡차곡 쌓이다'의 뜻으로는 '드러쟁이다'가 '진깡깡이', '깡깡이', '드러잡이다'보다 현실적으로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이다.

- 곰팡이—곰팽이(곰팡슬다→곰팡이)
- 잠방이—잠뱅이(잠방등거리→잠방이)
- 지푸라기—지푸래기(지푸락지→지푸라기)
- 꼭대기(×꼭다기)
- 가난뱅이(×가난방이)
- 갈매기(×갈마기)

요컨대 ‘ㄱ’역행동화가 적용 범위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ㄱ’역행동화가 적용된 어형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거나 ‘표준어 규정’에 의하여 맞추어 야만 하는 경우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서 ‘ㄱ’역행동화가 적용 안 된 어형을 인정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ㄱ’역행동화가 적용된 어형을 최소한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2. ‘-장이’와 ‘-쟁이’

‘무슨 직업이나 습관이나 성질, 모양 같은 것으로써 그 사람을 가리키는 낮게 이르는 말’을 ‘-장이’라고 사전들은 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이’는 ‘-쟁이’와 함께 뒤섞여 쓰일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이 사람 외의 일반 사물에도 두루 쓰이게 되면서 ‘-장이’와 ‘-쟁이’에 대한 심의 및 사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표준어 규정’ 제9항 붙임 2에서는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미장이’, ‘유기장이’,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밭목쟁이’를 예시하였다. 이 예시어들은 기술자(미장이, 유기장이), 기술자가 아닌 사람(멋쟁이), 동식물(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기타 일반 사물(골목쟁이, 밭목쟁이)들을 고루 포괄하고 있다. 이들 예시어에 대한 자료의 처리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4〉

예시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국교)	(중교)	비고
미장이	○	○	○	○	○	○						
유기장이												
멋쟁이	-장-	-장-	-장-	-장-	-장-	-장-				-장-		
소금쟁이		○	○	○	○	○				○		
담쟁이덩굴					○	○					○	
골목쟁이		×○	×○	×○	○	×○	○	-장-	○			
밭목쟁이		×○	×○	×○	×○	×○	○	○	○			

1) 미장이 : (모) 및 현용 사전에도 ‘미쟁이’가 아닌 ‘미장이’〔泥匠〕를 인정해 왔던 것이다. (국교)에서는 ‘미장이’ 대신 ‘미장공’〔泥匠工〕이 나타난다.

2) 유기장이 : (모)에는 ‘유기장이’가 나타나지 않는 대신 이와 동의어인 ‘늦갓장이’〔鎗器工〕가 나타난다. 사전에도 ‘유기장이’, ‘유기쟁이’가 보이지 않고 ‘유기장(鎗器匠)’만 나타난다.

3) 멧쟁이 : (모)가 ‘멧쟁이’나 ‘멧구러기’가 아닌 ‘멧장이’를 ‘侏儒’의 뜻으로 인정한 이래 사전에서도 ‘멧장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소금쟁이 : 사전이나 (국교)에도 동물 이름으로서 ‘소금쟁이’를 인정하고 있다.

5) 담쟁이덩굴 : (대)(우)나 (중교)에서도 식물 이름으로서 ‘담쟁이덩굴’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에서는 ‘담장이’(~匠-)일 경우 ‘토담장이’를 취하고 있다.

6) 골목쟁이 : (심)과 (연)에서는 ‘골목쟁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큰)(중)(새)(우)에서는 ‘골목’의 속어인 ‘골목자기’나 ‘골목’에 대한 비표준어로 보고, (대)에서는 ‘골목쟁이’, ‘골목자기’ 양자를 다 인정하고 있다.

7) 발목쟁이 : 사전에서는 이를 ‘발모가지’에 대한 비표준어로 다루고 있다.

위의 예시어 말고도 ‘표준어 규정’은 제25항과 제26항에서 ‘상투쟁이’, ‘발목쟁이’, ‘심술쟁이’, ‘욕심쟁이’, ‘파자쟁이’, ‘해자쟁이’를 제시하였는데 이들 말에 대한 사전과 개정안에서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¹¹⁾

〈표 5〉

	예 시 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25항	상투쟁이		X-장-	X-장-	X-장-	-장-	-장-	○	-장-	○
26항	발목쟁이		X○	X○	X○	X○	X○	○	○	○
	심술쟁이	X-장-	X-장-	X-장-	X-장-	-장-	X-장-	○	○	○
	욕심쟁이				X-장-	-장-	-장-	○	○	○
	파자쟁이		X-장-	X-장-	X-장-	-장-	-장-	○	-장-	○
	해자쟁이		-장-	-장-	-장-	-장-	-장-	○	-장-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이’, ‘-쟁이’에 관한 문제는 (모)에서

11) ‘-장이’와 ‘-쟁이’의 유형에 대해 ‘한국어 표준 발음 사전’은 대체로 ‘-쟁이’ 쪽을 취하고 있으며, 간혹 ‘-장이’와 ‘-쟁이’를 둘 다 인정하는 것도 보인다. 배꼽장이/-쟁이, 늦잠장이/-쟁이, 수다장이/-쟁이, 갈신장이/-쟁이, 재롱장이/-쟁이, 금관장이/-쟁이 등.

이미 거론되어 ‘난장이’〔侏儒〕, ‘멋장이’〔放逸者〕, ‘미장이’〔泥匠〕, ‘숫
갓장이’〔鎗器工〕, ‘고리장이’〔柳器匠〕, ‘옥사장이’〔獄鎖匠〕, ‘옥장이’〔磨
者〕, ‘잔말장이’〔恒例冗言者〕를 ‘-장이’로 함을 예시한 바 있다.

(십)은 ‘-장이’를 ‘-쟁이’로 하고 ‘가살쟁이’, ‘가짓말쟁이’, ‘간살쟁
이’, ‘갓쟁이’를 예시한 후 ‘(이하 생략)’이라고 함으로써 ‘-장이’가 붙
을 수 있는 모든 말을 ‘-쟁이’로 바꾸어 (모)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학)에서는 ‘-장이’, ‘-쟁이’가 함께 나타나는데 ‘삼투-’, ‘파자-’, ‘해
자-’는 ‘-장이’로, ‘발목-’, ‘심술-’, ‘욕심-’은 ‘-쟁이’로 하였는데 ‘-장
이’, ‘-쟁이’의 구분을 무엇으로 기준 삼았는지 알기 어렵다.

이어 (연)에 와서도 ‘-장이’쪽을 고수하려는 심의 위원과 ‘-쟁이’쪽을
주장하는 위원들간의 대립은 매우 첨예화하여 논란을 거듭하며 계속 유보
상태로 두었다가 개정안 작성 완료 직전에 가까스로 (십)과 같이 ‘-쟁이’
쪽을 취하였다.

국어심의회에서는, (학)이나 (연)이 구체화하여 밝히지 못한 ‘-장이’와
‘-쟁이’ 문제를 거론하여 ‘-장이’와 ‘-쟁이’를 구별해서 사용할 것을 명문
화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제 9 항 붙임 2 규정이다. 그러니까 이 규정은 대
립되는 두 입장을 고려하여 모색한 하나의 절충안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장이’가 되는 것이 ‘기술자’라고 할 때 이 ‘기술자’는 어떤 사
람이냐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당시 국어심의회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기
술자’는 ‘미장이’, ‘유기장이’처럼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국한될
수 있다. 이 해석에 의한다면 ‘석공’(石工)이나, ‘옥바치’ 그리고 ‘유기
공’(柳器工)은 두말없이 ‘돌장이’, ‘옥장이’, ‘고리장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갓물을 내리는 일’ 또는 ‘댕이질’이나 ‘곡식을 되는 일’을 업으
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갓물장이’, ‘댕이장이’, ‘말장이’라고 말할 수 있
을지 망설이게 된다. 왜냐하면 이들이 생업으로 삼고 있는 일이 과연 ‘수
공업’에 속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장이’나 ‘-쟁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
다. 더욱이 ‘손’을 주로 사용하되 고도의 미적 감각을 요하는 ‘화가’의
경우는 ‘그림장이’인지 ‘그림쟁이’인지 그 구별이 어렵게 된다.

또 입장을 약간 달리하여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규정문대로 ‘기술자’로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다. ‘기술’은 ‘공예의 재주’
뿐만 아니라 ‘학문으로 배운 이론을 실지로 응용하는 재주’이며 물건을 취
급하거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단, 솜씨¹²⁾도 뜻한다. 즉 ‘기술’은

12) 국어 사전 및 대백과 사전 참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또는 성취하는 방법’으로서 ‘인간적 욕구다 욕망에 적합하도록 주어진 대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인간적 행위’라고 할 만큼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장에서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영농기술(營農技術)을 익혀 농사짓는 농부¹³⁾도 기술자요, 사무실에서 컴퓨터 활용을 잘하는 사람도 기술자요,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여 판매 실적이 높은 사람도 기술자며 올바르게 소비하는 지혜를 갖춘 사람도 기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장이’와 ‘-쟁이’를 적용함에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¹⁵⁾ 국어연구소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안(案)을 마련하였었다. 제 1안은 모두 ‘-장이’로 통일하는 것이요, 제 2안은 직업이나 전문성을 띤 일에 관계하는 사람이면 ‘-장이’로, 그렇지 않으면 ‘-쟁이’로 하는 것이다. 제 1안은 ‘기술자’나 ‘수공업자’나,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막고 또 종래의 사전들이 ‘-장이’형을 인정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이요, 제 2안은 ‘-장어’가 이미 ‘-쟁이’로 바뀌어 상당한 세력으로 쓰이고 있음이 개정안 작성시에 참고한 여론 조사나 설문 조사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음을 외면하고 ‘-장이’쪽만 끝내 고수할 수는 없되, 또 그렇다고 모든 ‘-장이’를 ‘-쟁이’로 할 경우 이 개신형(改新形) ‘-쟁이’가 주는 비어적(卑語的)인 느낌을 어디까지나 받아들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의 절충안으로서 취해진 것이다.

이렇게 직업이나 전문성을 띤 일에 관계하는 사람에게 ‘-장이’로 부르는 제 2안에 따르게 되면 ‘-장이’나 ‘-쟁이’냐를 결정함에 문제되었던 ‘젓물-’, ‘뉘이-’, ‘말-’, ‘그림-’는 ‘수공업자’나 ‘기술자’나 여부에 관계없이 ‘-장이’가 되어, 채소 농사를 하는 사람도 ‘밭장이’요, 생업으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소리장이’요, 직업적으로 남의 손금을 보아 주는 사

13) 농촌진흥원을 통한 농업 기술 보급 사업의 하나로 새마을 영농 기술 교육이 있다.

14) 우리 나라 중등 학교에서의 기술 교육 내용은 1969년의 교육 과정 개정에 따라 설치된 ‘기술과’에 의하여 산업과 직업, 설계 제도, 목공, 재배, 기계 제도, 금속 가공, 기계, 전기, 전자 등으로 되어 있다.

15) 이익섭(1988: 23)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문교부의 최종안에는 국어연구소안(案)을 개악(改惡)하여 표준어가 억지라는 느낌을 주도록 만든 것이 있다. 제 9항 붙임 2가 그것으로 ‘미장이’처럼 기술자는 ‘-장이’로 하고 그 이외에는 ‘멋쟁이’처럼 ‘-쟁이’로 하도록 한 것이다. ‘점장이’는 기술자인가 아닌가의 해석에 따라 ‘점장이’인지 ‘점쟁이’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니 분명히 새 붙씨를 만든 셈이다.

람도 '손금장이'로 서슴없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이나 전문성을 띤 것에 관계하지 않으면 '-쟁이'이니 차림새나 모습을 나타내는 '덧-', '상투-'도 '-쟁이'요, 습관이나 행태(行態)를 나타내는 '잔말-', '트집-', '늦잠-', '난봉-', '수선-', '야살-', '흉내-', '심술-', '익살-'도 '-쟁이'요, 성질을 나타내는 '꿈꿈-', '뽀뽀-'도 '-쟁이'며, 건강상 이상이 있는 이를 나타내는 '옴-', '찰담-', '긱긱-', '쿨룩-'도 '-쟁이'며, 어떤 처지나 신분을 나타내는 '만만-', '돌림-', '할미-'도 '-쟁이'가 될 것이다. 이 제 2안은 고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확대 해석한 것으로 규정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현실 언어 감각에도 벗어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연구소에서는 제 2안을 기준하여 '-장이'와 '-쟁이'를 심의해 왔던 것이다.¹⁶⁾

3. '수-'와 '숫-'

웅성(雄性)을 나타내는 '수컷'에서 기원하는 말에 대하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고 또 개정안을 작성할 때마다 관계 인사들이 적잖은 고심을 해 왔다.

'표준어 규정' 제 7항에서는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고 한 원칙을 세워 '수쟁',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를 예시하고는 예외 조항으로 '수-' 접두사 다음에 거센소리를 인정하는 단어(강아지, 개, 것, 기와, 닭, 당나귀, 들찌귀, 돼지, 병아리)와 접두사가 '숫-'으로 되는 단어(양, 염소, 쥐)를 제시하였다. 이들 예시에 대한 참고 자료의 처리는 <표 6>과 같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수-' 결합형을 인정하여,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은행나무, 수소'를 취하고 있으며, '강아지, 개, 것, 기와, 닭, 당나귀, 들찌귀, 돼지, 병아리'와 결합할 때에는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닭, 수당나귀, 수들찌귀, 수돼지, 수평아리'가 되어 위 규정과

16) 제 2안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긴 하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버르장아이', '버르쟁이'의 경우 이것은 '버릇'의 속어 또는 낮출말이므로 버르쟁이'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아직 '버르장아이'라고 많이 쓸 뿐더러 '버르장머리'와의 관련도 고려하여 '버르쟁이'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 2안 기준에 맞추어 '버르쟁이'로 하든가 아니면 예외를 두어 '버르장아이'로 하든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방안이 채택될 경우, 이미 고시된 '해자쟁이', '파자쟁이'는 직업이나 전문성을 띤 일에 종사하는 사람(점장이)이므로 '해자장이', '파자장이'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표 6>

예 시 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국교)	(종교)	비고
수평		-평	-평	-평	-평	-평	○	숫-	숫-			
수나사				○	○	○	○	숫-	숫-			
수놈		○	○	○	○	○	숫-	숫-	숫-			
수사돈		○	○	○	○	○	○	숫-	숫-			
수소		○	○	○	○	○	○	숫-	숫-			
수은행 나무		○	○	○	○	○	○	숫-	숫-			
수강아지		○	○	○	○	○			○			
수캐		○	○	○	○	○		○	○			
수컷		○	○	○	○	○	○	○	○			
수키와		○	○	○	○	○	○	숫기-	○			
수탉		○	○	○	○	○		○		○	○	
수탕나귀					○	○	○	숫담-	숫담-	숫들-		
수톨찌귀		○	○	○	○	○	○	숫들-				
수뺨지		○	○	○	○	○		숫뺨-	○			
수평아리		○	○	○	○	○			○			
숫양							수-	○	○			
숫염소							수-	○	○			
숫쥐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에서의 예시어와 사전이 다르게 처리된 것은 '수평'이 '수평'으로 되었다는 것과,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으나 '수'와 '양', '염소', '쥐'의 결합형이 이 규정에서는 '숫양', '숫염소', '숫쥐'로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사전에서 '수'를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심)에 이어지다가 (학)과 (연)에서는 현실 발음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숫-'으로 정하였었다. '강아지', '개', '것', '기와', '닭', '뺨지', '병아리'를 제외한 말들은 '숫-'으로 통일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연)은 검토위원회와 조절위원회에서도 동의를 얻어 통과되었던 것인데 국어심의회에서 '수-'로 되돌려져 확정·고시되기에 이르렀다.

이 규정은 다음의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음성(雄性)을 나타내는 것이 과연 '수'냐 아니면 '숫-'이냐 하는, '표준어 규정'에 대원칙으로 제시된 형태에 대한 문제이고, 둘째는 '표준어 규정'을 따른다고 할 때 예외 조항으로 둔 것들이 여기에 보인 단어들뿐이냐 아니면 예시어

와 동일한 음운 환경에 있으면 다른 말들도 이 예외에 포함되느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이다.

우선 첫째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한다.

사전이나 교과서는 ‘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언중들은 ‘숫-’으로 발음하는 것이 지배적이다.¹⁷⁾ 물론 발음은 [숫]으로 하고 표기는 ‘수’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¹⁸⁾도 있다. 그러나 ‘수소’로 적어 놓고 [숫소]로 읽고 말하기를 일반 언중에게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한다.¹⁹⁾ 그러기에 (학)이나 (연)은 명사 ‘암수’(‘수’는 역사적으로 ‘수흥’입)가 있음에도 이 ‘수-’를 ‘숫-’으로 하여 음성(雄性)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다.²⁰⁾ 그러나 결과적으로 ‘수’를 인정함으로써 현실 언어와

- 17) 이 현상은 일반적인 언어 현실에서뿐만 아니라 축산 경영학회(모진동 소재), 축협판매장이나 대리점 또는 축협 정육점(신림동, 신길동, 번동, 장안동 소재)에서도 나타난다. 심지어는 축산물 시세 자동 응답(전화: 485-1163)에서도 ‘숫소’, ‘숫송아지’의 시세를 알려 주고 있다. 축협 중앙회 홍보실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이동규: 29세)는 현실 발음과 다른 표준어 ‘수’로 결정된 것을 직원들과 함께 의아해하며 고시된 표준어를 애써 익히고 있다고 한다. 또한 소값 파동 때에 신문에 호소문을 낼 적에도 현실 발음대로 ‘숫소’로 썼다가 ‘수소’로 고시된 후에야 비로소 ‘숫소’가 틀린 것을 알고 조심했다는 경험담도 들은 바 있다.
- 18) ‘수소’로 적고 발음은 [숫소]로 하는 까닭은 ‘수+(ㅎ)+소’의 음운 현상에서 ‘수’는 ‘ㄱ·ㄷ·ㄴ·ㅈ’처럼 격음이 없기 때문에 ‘소’의 ‘ㅅ’음이 거센소리로 변하지 못할 뿐이다. 또한 ‘ㅎ’의 소리는 말음법칙(末音法則)의 절음법(絶音法)에 의하여 ‘ㄷ’으로 소리나기 때문에 ‘수소’로 적되 발음을 [숫소]로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수염소’도 적기는 그대로 적되 발음은 [숫염소]로 해야 하는 것이다(진태하; 1989.10. 국어교육월보 제27호).
- 19) 이는, 발음 표시의 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 없이 발음과 다른 표기를 정하고 그에 대한 발음을 별도로 표시해 주어야 하므로 표기와 발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 20) (학)과 (연)의 심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이익섭은 ‘수-’를 ‘숫-’으로 개정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988: 22~23).
 ‘암늬, 수늬’의 ‘수늬’도 비현실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억지스러움을 느끼게 하던 것이어서 국어연구소안(案) 때까지 ‘숫늬’으로 고쳤었다. 그런데 문교부의 최종안에서 다시 ‘수늬’으로 환원하였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숫늬’은 어원적으로 ‘숫늬’일 것이다. ‘수늬, 수개’도 어원적으로 ‘숫늬, 숫개’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반침에 ‘ㅎ’을 살려쓰는 것이 번잡스럽게 느껴져 ‘수늬, 수개’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럼더라도 반침 ‘ㅎ’은 발음상으로는 살린 것이다. 마찬가지로 ‘숫늬’의 경우에도 발음은 ‘수늬’이어서 반침 ‘ㅎ’이 분명히 살아 있고 따라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려야 한다. 그런데 ‘ㅎ’은 ‘수개’에서도 쓰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한 대안(代案)으로 등장한 것이 ‘숫늬’이었다. 그것을 ‘수늬’으로 정한

표준어가 이원화하여, 현실 언어를 오히려 표기에 억지로 맞추어야²¹⁾ 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은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 차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본항 다만 1. 다만 2. 규정에 대한 해석은 해설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하여, '수-'와 결합하여 거센소리가 되는 단어 및 예외적으로 '숫-'을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된 것에 국한하느냐 아니면 이들 예시어와 동일한 음운 환경일 때에는 개방적으로 다 적용되느냐 하는 해석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 예외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두고 견해차²²⁾를 보이는 두 입장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견해 1 : 예시어에 국한한다는 입장

[다만 1]과 [다만 2]에 제시된 이외의 단어에서는 '수'로 통일하였다. 이 접두사의 기본형을 '수-'로 잡은 것이다. 여기 제시된 이외의 어떤 단어, 가령 '거미, 개미, 할미새, 나비, 술' 등은 모두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로 통일한 것이다. 여기에서 '수늬, 수소'의 현실음이 과연 아무 받침이 없이 이렇게 발음되는지, 아니면 '숫늬, 숫소'인지 하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숫려, 숫양'은 '수려, 수양'이 아니면서 '수늬, 수소'는 '숫늬, 숫소'가 되지 못하는 불균형이 드러나기도 한다(이익섭 ; 1988 : 14).

것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은 형태를 억지로 표준어로 삼은 또 한 번의 우(愚)임이 분명하다.

- 21)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2) 이 다만1과 다만2 규정이 주는 혼란에 대하여 진태하(1989)는 다음과 같이 우려하였다.

예외 규정에서 '수탕나귀'나 '수평아리'는 물론 '수물찌귀'까지도 격음으로 변한 것을 표준 삼고 있다.

그렇다면 표준어 규정집에 예로 들지 않은 '수뺨-수뺨', '수체비-수체비', '수뺨조-수뺨조', '수참자리-수참자리', '수뚝수리-수뚝수리' 등은 어느 것이 맞는 표기법인지 누가 알 것인가?

더더구나 문제는 예외의 예외 규정을 또 두어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숫'으로 한다."고 정해 놓고, '숫양-수양', '숫염소-수염소', '숫려-수려'를 예로 들어 앞의 말을 표준어로 삼고, '수양', '수염소', '수려'는 버린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 규정에서는 '수소'를 표준어로 삼고 '숫소'는 버린다고 언급하여 놓았다. 또한 예로 들지 않은 '수여우-숫여우', '수이리-숫이리', '수오리-숫오리' 등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견해 2: 예시어와 동일한 음운 환경일 때에는 개방적으로 다 적용된다
는 입장

수컷을 이르는 '수-숫'의 표기

- ① 수-뺨, 수-나사, 수-사돈, 수-은행나무
- ② 수-강아지, 수-탑, 수-평아리
- ③ 숫-양

[해설] '암-수'의 '수'는 '수'를 기본 형태로 삼고 ① 단독 형태로 쓰이거나 경음(硬音) 또는 [ㄴ, ㄹ, ㅍ]²³⁾, [ㄷ, ㅌ, ㅍ]²⁴⁾ 위에서는 '수'로 적고, ② 'ㄱ·ㄷ·ㅂ' 위에서는 "ㄱ·ㄷ·ㅂ"을 'ㅋ·ㅌ·ㅍ'으로 격음화(激音化)시키고 '수'로 적으며, ③ 'ㅈ'과 '이' 또는 '이' 선행모음(先行母音) 앞에서는 '숫'으로 적는 것으로 분화(分化)시켰다. 따라서 '제비, 자라, 염소, 이리' 등 위에서도 '숫'을 쓴다(이운백; 1988: 40).

이상 소개한 두 설명은 각각 '표준어규정'에 대한 해설로, 동일한 규정을 놓고 이의적·이운백은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운정(1988; 186~187)에서도 이운백과 같은 입장에서 이 규정을 해석하였다.²⁵⁾

한편 진태하(1989)는 이러한 혼란을 주는 예외 규정을 두지 말아야 할

23) 수-말

24) '이'나 '이' 선행 모음이 아닌 음

25) (1) 'ㅎ'(옛말에서의 'ㅎ' 끝소리가 유지되는 형태)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를 이루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낱말이 붙은 것은 거센소리 형태를 취한다.

- (ㅎ+ㄱ→ㅋ) (수-강아지)수강아지 (수-개)수개 (수-것)수것
(수-기와)수기와 (수-고양이)수고양이 (수-곰)수곰
(ㅎ+ㄷ→ㅌ) (수-닭)수닭 (수-당나귀)수당나귀 (수-돌쩌귀)수돌쩌귀
(수-돼지)수돼지 (수-담비)수담비 (수-두루미)수두루미
(ㅎ+ㅂ→ㅍ) (수-평아리)수평아리 (수-벌)수벌 (수-뱀)수뱀
(수-비둘기)수비둘기

다만, 'ㅈ'을 첫소리로 가진 낱말이 붙은 것은 거센소리(ㄷ)로 발음되지 않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숫'형으로 한다.

- (수-자라)숫자라(×수차라) (수-잠자리)숫잠자리(×수참자리)
(수-제비)숫제비(×수체비) (수-지네)숫지네(×수치네)

(2) 'ㅎ'과 결합하여 거센소리를 이루지 않는 첫소리를 가진 낱말이 붙은 것은 '수'형으로 한다.

- (수+ㄴ) 수-나사 수-너구리 수-노루 수-늪
(수+ㅁ) 수-막새 수-말 수-메기 수-무지개
(수+ㅅ) 수-사돈 수-사슴 수-새 수-소 수-술(수꽃술)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²⁶⁾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 7항이 안고 있는 문제 '수'와 '숫-' 중 어느 것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또 예외 규정은 어느 선까지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좀더 깊이 연구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4. 모음조화

발음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더라도 모음조화 현상이 지켜진다는 의성의태어(擬聲擬態語)나 부사형 어미 '아'와 '어', 이른바 과거 서체 '-았-'과 '-었-'에도 이 현상이 무너지고²⁷⁾ 특히 양성모음이 음성모음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준어 규정 제 8항에서는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 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 아래 ‘강충강충(×강총강총), ‘-둥이(×-동이), 발가숭이(×발가송이), 봉죽(×봉죽), 뿔장다리(×뿔장다리), 아서, 아서라(×앗아, ×앗아라), 오뚝이(×오뚝이), 주추(×주초)’를 들고, 다만 조항으로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부조(扶助), 사돈(查頓),²⁸⁾ 삼촌(三寸)’은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

된소리나 거센소리를 첫소리로 가진 낱말이 붙은 것도 이에 준한다.

수-깡 수-쭈제비 수-깡겨루 수-파리 수-호랑이

(3) ‘야, 여, 요, 유, 이’로 시작되는 낱말이 붙어서 ‘ㄴ’음이 첨가되는 것은 ‘숫-’형으로 한다.

숫-양[순냥] 숫-염소[순념소] 숫-여우[순너우] 숫-이리[순니리]

다만 ‘야, 여, 요, 유,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낱말이 붙은 것은 ‘수-’형으로 한다.

수-은행나무 수-오리

- 26) ‘암’과 ‘수’의 접두사 뒤에 오는 평음(平音)의 자음 중 ‘ㄱ·ㄷ·ㄴ·ㅈ’이 ‘ㄱ·ㅌ·ㅍ·ㅊ’으로 변음하는 현상은 인위적인 규정이 아니라, 국어의 음운 현상(音韻現象)에서 ‘ㅎ’음의 첨가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종래의 원칙대로 ‘암·수’의 뒷소리는 격음(激音)으로 적는 것을 표준어로 삼고 예외 규정을 두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수깡’은 마땅히 ‘수깡’으로 적어야 옳다. ‘숫염소’도 마땅히 ‘수염소’로 적어야 한다.

- 27) 남광우(1978 : 212~216)는 서울말의 발음 경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긴소리(말의 장단)의 혼란, 된소리화의 경향, 단모음화(單母音化)현상, 원순모음화(圓脣母音化)현상, 유성음(有聲音) 사이에서의 ㅎ탈락, 구개음화 현상.
- 28) 정재도(1988.1.16. 경향신문)는 ‘사돈’이 본항의 예시어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는다”²⁹⁾고 하였다. 여기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 예시어 중에서 ‘강충강충’과 ‘오뚝이’로, 각 자료들은 <표 7>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

<표 7>

예 시 어	(모)	(큰)	(중)	(새)	(대)	(우)	(심)	(학)	(연)	(국교)	(중교)	비고
강충강충		←		-충-충	→		○	○	○		-충-충	
오뚝이		-뚝-	-뚝-	-또기	-뚝-	-뚝-	○	-뚜기	○		-뚝-	

사전에서는 모음조화에 따라 발음되는 ‘강충강충’을 인정하고 ‘강충강충’은 인정하지 않거나 등재하지 않았다. (국교)에서도 ‘강충강충’이 나타나다. 그러나 이 말은 ‘ㄱ’라는 양성 모음과 ‘ㄷ’라는 음성모음이 결합된 ‘강충강충’이 현실적으로 더 우세하게 쓰인다고 보아 (심)(학)(연)에서 ‘강충강충’으로 정한 것이다.

그리고 ‘오뚝하다’의 경우 (모)는 ‘兀然’의 뜻으로 ‘우뚝하다’와 이의 작은말로 ‘오뚝하다’를, ‘突起貌’의 뜻으로 ‘우뚝우뚝’과 이의 작은말로 ‘오뚝오뚝’을 함께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아이들 장난감의 한 가지로 자그마한 인형으로 아무렇게 굴러도 오뚝오뚝 일어나게 만든 것’의 뜻으로 (새)는 ‘오또기’로, 나머지 사전은 ‘오뚝이’로 정하는 한편 ‘오뚝하게 솟은 모양’이라는 부사로는 사전 모두 ‘오뚝이’를 취하여 사용상 혼란을 빚어 왔었다. 이것을 (심)에서는 명사든 부사든 ‘오뚝이’로 정하였다가 (학)에서는 명사인 경우 ‘오뚜기’로 바꾸었었는데, (연)에서 다시 (심)대로 ‘오뚝이’로 되돌리어 확정에 이른 것이다. (국교)에도 ‘오뚝이’, ‘오뚝하다’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모)나 사전들에는 일반적으로 ‘ㄱ·ㄱ’, ‘ㄱ·ㄱ’ 결합형의 의성·의태어들을 제시하고 있다. 상징어로는 ‘깡뚱거리다, 깡뚱깡뚱, 깡뚱하다, 다보록다보록, 다북다북, 도도룩하다, 뽀족하다, 짹뚱짹뚱, 오뚝오뚝, 움썽움썽, 짹썽짹썽, 호줄근호줄근’ 등이 있고 상징어 외에도 ‘아리송하다’, ‘오복하다’ 등도 ‘ㄱㄱ’, ‘ㄱㄱ’형으로 나타나, 양성모음끼리의 결합이 비교적 강세를 띠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29) 이 예시어 중 ‘부조’, ‘사돈’, ‘삼촌’을 종전대로 두게 된 데 대하여 김택춘(1988.2.5. 시사저널)은 “현실음을 중시한다면서 8항에서와 같이 어원 의식이 강하다고 하여 ‘부주’, ‘사뉘’, ‘삼촌’을 제치고 ‘부조’, ‘사돈’, ‘삼촌’을 표준어로 삼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로 (국교)(중교)에 ‘홀쭉하다’, ‘다복술’, ‘뽀죽하다’, ‘오뚝이’, ‘오목하다’는 있어도 ‘홀쭉하다’, ‘다복술’, ‘뽀죽하다’, ‘오뚝이’, ‘오목하다’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사전들은 ‘일이 많지 않아서 홀가분하다. 일이나 차림차림이 간편하다’의 뜻으로 ‘단출하다’를, ‘어린아이들이 의 좋게 노는 모양’으로 ‘오순도순’을 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각 사전들이 선택하는 데에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있는바, ‘가동질·가동질’, ‘깡충하다·깡충하다(다리가 길다), ‘다미씨우다·더미씨우다’, ‘담쭈·담쭈’, ‘오돌오돌·오돌오돌·우들우들’, ‘자옥하다·자옥하다’, ‘해발쭈하다·해발쭈하다’, ‘홀쭈이·홀쭈이’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모음조화를 둘러싼 혼란상은, (국교)에서 ‘자옥하다’로 제시된 것이 (중교)에서는 ‘자옥하다’로, (국교)에서 ‘오순도순’으로 보인 것이 (중교)에서는 ‘오손도손’으로 나타나는 데까지 이르렀다. 제 8항 예시어 ‘깡충깡충’, ‘오뚝이’를 ‘깡충깡충’, ‘오뚝이’로 바꾼 것은 (심)에서부터 출발하여 (학)(연)에 이어진 것으로 ‘우리말의 변천을 반영’한³⁰⁾ 결과였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알룩달룩’이나 ‘아롱다롱’ 같은 말은 ‘알룩달룩’이나 ‘아롱다롱’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깡충깡충’이나 ‘오뚝이’처럼 어느 한 쪽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은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어떤 것은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로 일일이 외어야 하고, 사전 만드는 이들도 이 문제를 두고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³¹⁾

따라서 음성모음 형태로 바뀌지 않는 말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아

30) 현실 발음의 수용에 대하여 동아일보(1987. 4. 28. 사설)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어느 나라에서나 언중이 쓰는 언어는 쉬지 않고 변하면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어떤 법칙성이나 궤도 없이 무질서하게 방치된다면 언어의 발전과 통일은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는 언어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법칙성을 부여함으로써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필요불가결의 역할을 맡고 있다.

31) ‘표준어 규정 해설’(표준어 모음 제 1집)을 발간하기 위한 검토위원회에서도 이런 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

한편 ‘깡충깡충’을 ‘깡충깡충’으로 바꾸는 데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최기호(1987: 5)의 글에서 대변된다고 하겠다.

‘깡충깡충’, ‘깡충깡충’은 음운 교체법으로 많은 단어를 파생시키며, 어감을 달리해 주는 국어의 특징인데, 이것을 표준말로 규정하려는 발상은 참으로 국어를 알고 하는 일인지 한심스런 느낌이 든다.

올려 음성모음의 형태를 살린다는 '표준어 규정'의 취지도 고려하여 의성어와 의태어의 경우에는 양성모음의 형태와 음성모음의 형태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 맺는 말

이상 '88년 1월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이후에 계속되어 온 표준어심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나 자료 검토 과정에서 느꼈던 바에 대하여 몇 가지 필자 개인의 사견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 논급한 'ㄷ'역행동화, '-장이'와 '-쟁이', '수-'와 '숫-', 모음조화 등은 이른바 현안(懸案)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다. 우리 표준어의 이상(理想)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분들의 진지한 연구와 성의 있는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국어연구소(1986),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1·2·3학년용).
 ———(1987), 표준어 개정안.
 ———(1987), 국민학교 교육용 어휘(4·5·6학년용).
 ———(1987), 표준어 규정안.
 ———(1987),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 주요 내용, 국어생활 제9호.
 ———(1988), 중학교 교과서 어휘(국어·국사).
 ———(1988), 표준어 규정 해설.
 남광우(1978), 서울말의 발음 경향과 표준말의 문제점, 어문연구 제20호, 일조각.
 이응백(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 제13호, 국어연구소.
 진태하(1989), 국어교육월보 제27호,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월보사.
 최기호(1987), '표준어 규정' 개정안의 문제점, 한글 새소식 제179호, 한글학회.